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123

발의연월일: 2021. 3. 25.

발 의 자 : 신영대・양정숙・허 영

오영훈 · 김성주 · 서영교

신정훈 · 이해식 · 김영호

위성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, 주식,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,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 및 가치도 급증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현금, 예금, 주식,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,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임.

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 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재산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	②
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다음 각 목의 동산·증권·채	3
권·채무 및 지식재산권(知識	
財産權)	
가. ~ 카. (생 략)	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타.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
	이상의 「특정 금융거래
	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
	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
	<u>따른 가상자산</u>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